

의안번호	제 40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2
-------	-----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청(2019.8.)

- 추진배경(문제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 단기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등 신고에 제한을 초래
- 개선요청: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 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

나.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와 중대범죄(수뢰액 3천 만원 이상 등)의 공소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폐지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보상금 지급 신고기한(現 조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 일반 부조리: 3년 /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금품, 향응 등): 5년

*** 「형법」 상 뇌물죄: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3천만원 이상: 7 ~ 15년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2020.1.)

- 부조리신고 종결사유 및 신고자(협조자 포함) 신변보호 조치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가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근거 법률을 명시(안 제2조제1호나목)

-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나. 공무원 등에게 알선·청탁을 받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별표 1)

- 다른 공무원의 → 다른 공무원 등의

다.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조리행위 신고기한 조문 삭제(안 제4조)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삭제

라. 부조리신고에 대한 종결사유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6조제3항)

-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신설]

마.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 마련(안 제7조제4항)

-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바. 공무원 등의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육감이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교육공무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감경(면제 포함) 요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보완함(안 제7조2제1항)

-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일부 미비사항(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문 수정(안 제14조제3항)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아. 별표 제목을 조례 제명 변경 및 부조리 신고유형 및 보상금액 추가하여 부조리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훼손한 부조리 행위(신설)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 이내(신설)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백만원 이내(신설)

○ 신고금액의 지급기준 → 보상금액의 지급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6.~ 2020. 3. 26., 20일간):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사립학교법」 제4조”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 등의”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4항) 중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를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페센트 이내·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페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페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3백만원 이내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해손한 부조리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3천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3백만원 이내

2. 보상금액의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가. (생략)</p> <p> 나.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p> <p> 다. (생략)</p> <p>2. (생략)</p> <p>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 가. 나.(생략)</p> <p>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u>공무원의</u>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암선·청탁을 하는 행위</p> <p> 라. (생략)</p> <p><u>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부조리</u></p>	<p>제2조(정의) -----.</p> <p>1. -----.</p> <p> 가. (현행과 같음)</p> <p> 나.----- - <u>「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u>-----</p> <p> 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p> <p> 가. 나.(현행과 같음)</p> <p> 다. ----- - <u>공무원 등의</u> -----</p> <p> 라.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 ②
(생략)

<신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③
(생략)

<신설>

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

----- 사람은(이하 “협조자”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교
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
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별표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u>충청북도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교
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3

호 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1] 부조리신고 -----

<u>육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행위</u>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u>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선청탁행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 향응 수수액 · 금품 수수액 개별 항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공무원 등의</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이고 균형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3천만원 이내
<u>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2. 신고금액의 결정기준 등

- (생략)
- (생략)
- (생략)

2. 보상금액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 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1. 3. 8., 1995. 12. 29., 1997. 1. 13., 1999. 8. 31., 2016. 5. 29.>>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② 삭제 <1991. 3. 8.>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72. 12. 28., 1977. 12. 31., 1981. 2. 28., 1986. 5. 9., 1990. 4. 7., 1990. 12. 27., 1997. 1. 13., 1999. 8. 31., 2001. 1. 29.,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大學教育機關”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 감사관 주무관 고영득 (043-290-2074)